



일학습병행학과 운영규정

[제목개정 2023. 3. 1]

제정일	2021. 3. 1
개정일	2023. 5. 1
개정차수	5차
담당부서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학칙 제22조의 8(계약학과 설치·운영) 중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주관부서) 일학습병행학과 운영을 위한 주관부서는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2. 1, 2023. 3. 1)

제 3조 (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하는 대학(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일학습병행학과라 함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수료자 및 동등 학력 이상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융합형·최신 기술 중심의 기술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자격)과 대학 졸업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고속런일학습병행(P-TECH)학과(이하 “P-TECH”라 한다.), 전문대 전공심화 과정을 일학습 병행과정으로 개편하여 상위 자격 및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력개발 고도화 과정(이하 “경력개발 고도화 학과”라 한다.), 기타 재직자 과정 학과 및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개설하는 학과(이하 “첨단산업 아카데미과정”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3. 1)
3. “모체학과”라 함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내의 일반학과를 말한다.

② 대학과 일학습병행학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학습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3. 1)

1.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참여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3.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학과를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3. 3. 1)
4. 일학습병행학과를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확보 또는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개정 2023. 3. 1)
5. 그 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학습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4. 그 밖에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 2 장 설 치 및 운 영

- 제 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일학습병행학과의 정원은 해당 학년도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
- ② 일학습병행학과의 재학생 수는 교사 및 교원확보율 계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첨단산업 아카데미 과정의 학과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3. 1)
- ③ 일학습병행학과의 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수여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 2023. 3. 1)

학과	정원구분	입학정원	전문학사 학위종별	비고
AI응용소프트웨어과	정원외	60	공업전문학사	고숙련 일학습병행 (P-TECH)
AI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정원외	20	공학사	경력개발 고도화 과정
미래자동차학과	정원내	20 (운영정원)	공업전문학사	첨단산업 아카데미 과정

- 제 5조 (P-TECH 계약 및 설치) ① 일학습병행학과인 경우 대학과 산업체 등이 법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체 소재지의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기준)인 경우로 본다. (개정 2023. 3. 1)
- ② 일학습병행학과는 대학과 산업체 등이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폐지, 휴학 복귀 후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8.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 ③ 일학습병행학과의 설치에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된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
- ④ 일학습병행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

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

제 6조 (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일학습병행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일학습병행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

제 7조 (설치 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일학습병행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첨단산업 아카데미 과정의 학과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② 제 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일학습병행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

③ 일학습병행학과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학습병행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일학습병행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일학습병행학과와 관련된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며 졸업 시 소속은 기존 일학습병행학과로 하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운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1)

④ 일학습병행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23. 3. 1)

⑤ 제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격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제 5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고용노동부의 등록금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일학습기업에 취업하여 교육훈련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제 5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여기간의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기업에 취업하여 교육훈련에 참여 할 경우에는 당해 일학습병행학과에서 맡을 수 있으며, 이때 잔여 등록금은 학생이 부담한다. (개정 2023. 3. 1)

제 8조 (운영경비) 일학습병행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 3. 1)

제 3 장 학생선발

제 9조 (입학자격, 학생선발, 학습구분) ① 일학습병행학과 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은 특성화고등학교(도제과정)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산업체 재직자이어야 한다. 단, 첨단산업 아카데미 과정의 학과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3. 1)

② 일학습병행학과 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 재직증명서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

③ 일학습병행학과 학생의 선발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입학자격이 있는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 3. 1)

④ 학습구분은 주·야간과정, 주말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1조 (입학허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13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일학습병행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 3. 1)

② 교육과정 편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보고서”로 운영한다.

제15조 (교육과정 운영) ① 수업은 출석수업(Off-JT),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원격수업 및 그 밖에 일학습병행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3. 1)

②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성적은 대학에서 대학의 교원이 기업현장교사와 함께 평가하고, 교과목 교원이 교육과정표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며 책임교수 또는 학과장이 학점을 확인한다.

③ 대학의 전임교원(정년 및 비정년교원 포함)은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훈련의 30%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하며 일학습병행학과의 책임교수 또는 평생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

④ 학과장 또는 책임교수는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방문지도에 학과 또는 모체학과의 교원을 배정하고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방문지도 계획서를 취합하여 공동훈련센터에 제출하며 계획에 따라 방문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⑤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학점은 1학기 당 12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⑥ 학점 및 시수의 편성기준은 1학점 당 1시간 이상으로 하고 모든 과목은 학점 당 이수시간을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주당 24시간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출석인정) 일학습병행 매뉴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각·조퇴의 경우 타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지각·조퇴 기준을 준용하여 휴식시간을 포함한 단위시간(1시간)의 50%(30분)이상 훈련에 참여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구분	대상	일수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5일
휴가	적용안함	-

제17조 (졸업학점, 최소이수학점 배분) ① 재학기간 중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22.12. 1)

② 계약학과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 배분은 다음과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구분	교양 졸업학점	전공 졸업학점	졸업학점
P-TECH학과	8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74학점 이상
경력개발 고도화			60학점 이상

제18조 (교과이수 학점) ①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학칙을 준용한다.

② 교과목별 수강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의 훈련운영 계획을 적용하여 교과목별 학점을 신청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의 교과목이 교육부에 신고한 기준 교과목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 교과목별 매칭교과목에 따라 학점을 신청한다.

제19조 (수업연한) 일학습병행학과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단, 첨단산업 아카데미 과정의 학과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제20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휴학) 일학습병행학과는 사업기간과 교육훈련과정이 정해진 관계로 참여 학생의 휴학(병역복무에 의한 휴학 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2023. 3. 1)

제22조 (제적) 학칙 제24조(교과이수단위)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를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 5 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23조 (등록금) ① 학칙 제48조를 준용하되, 수업료, 입학금 등의 등록금은 일학습병행사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금을 감안하여 별도로 결정하며, 출석시간에 따라 재정지원금으로 수업

료가 충당되는 일학습병행학과는 학생의 결석에 의한 재정지원금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학생에게 별도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

②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등록금 사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일학습병행학과 학생의 등록금은 학기단위로 입금되며,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급 정책에 따라 능력단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한다. 단, 중도탈락시 반환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3. 1)

제 6 장 교원의 책임수업시간 및 강사료 지급

제24조 (교원의 책임시수 감면) 일학습병행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시수는 “교원의 책임수업시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2. 3. 1, 2023. 3. 1)

제25조 (강사료 및 업무수당의 지급) ① Off-JT 강의 강사료는 주중 강의와 주말 및 공휴일 강의로 나누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주중 : 전임교원 초과강의로 및 비전임교원 강사료는 대학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

2. 주말 및 공휴일 : 전임교원 초과강의료는 대학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고, 비전임교원의 강사료는 시간당 55,000원으로 지급

3. 단, 주말 및 공휴일에 강의를 하더라도 주중 강의의 보강 및 비대면수업의 경우는 주중 강의와 동일하게 지급

② 전담직원의 업무수당은 주말근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당해 연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1]

제26조 (지도비의 지급) ①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지속적인 지도 및 모니터링을 위해 담당 교수에게 지도비(OJT 교과지도비, Off-JT 교과목 중 PBL(Project Based Learning) 지도비, 학습근로자/학습기업 지도비 등 포함)를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도비 지급액은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2. 1)

[전문개정 2021. 6. 1]

제 7 장 학업성적처리

제27조 (성적의 배점 및 평가) ① 학업성적은 출석성적 20%, 평소성적(수시고사, 과제물, 수업태도 등), 중간고사, 기말고사 80% 비율로 산출한다.

② 성적배점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성적배점 비율표]

유형구분	출석	평소학업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A형	20%	20%	30%	30%
B형	20%	30%	25%	25%
C형	20%	40%	20%	20%

제28조 (시험) 시험은 학과목 진행 비율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고사종별	학과목 진행 비율	비 고
중간고사	40~60%	
기말고사	80~100%	
수시고사	30~70%	

제29조 (성적평가방법)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 1)

제 8 장 휴보강 운영

제30조 (휴강 및 결강) 휴강 및 결강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휴강할 경우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보강계획서에 따라 보강을 실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 「일학습병행 매뉴얼」, 대학의 학칙 및 학사규정, 계약학과 운영 규정 등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